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7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규정과 개최실적이 없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2018. 12. 18.)으로 조례로 위임된 보조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 범위 삭제(안 제2조)
- 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 신청절차 보완(안 제4조)
- 다. 유명무실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6조~제10조,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7.~1. 28.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조사업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 제8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 4. 보조사업 효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1조·제12조를 제6조·제7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li> <li>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li> <li>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li> <li>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li> <li>6.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li> <li>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li> <li>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li> <li>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li> <li>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li> <li>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li> </ol> <p>&lt;삭 제&gt; &lt;삭 제&gt;</p>
	<p>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p>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청 공무원 3명,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센터의 교육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삭 제>

<삭 제>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6조~제7조 (현행 제11조·제12조와 같음)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서식]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남/여)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 목적			
보조사업에 <u>필요한</u> 경비			
총사업비	군비보조	자체부담	<u>그 밖의 경비</u>
보조사업 기간			
사업계획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